발 간 등 록 번 호 11-1790365-000030-01

# 해외사업자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2024.4.



발 간 등 록 번 호 11-1790365-000030-01

# 해외사업자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2024.4.



# 해외사업자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 발간 목적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해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법 적용 시 유의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준수사항을 안내합니다.

#### 제·개정 이력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제·개정하였습니다.

일자	주요 내용
'24. 4. 발간	해외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기준 및 준수해야 할 사항 안내

#### 재검토 기한

안내서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발간일(2024년 4월)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31.까지를 말함)마다 보완 및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저작권 표시

본 안내서 내용의 무단전재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외사업자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2024. 4.

#### 문의처

본 안내서 내용 관련 문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02-2100-3118, 3114, 3117)로, 개인정보보호 법령 질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령해석 지원센터(☎02-2100-304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제31조의2, 제34조 등

- ※ 법령 최신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최신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 개인정보 포털\*\*을 참고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 : 법령 > 법령정보 > 안내서
  -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자료 > 자료보기 > 안내서

	I 배경	
	II 원칙	
	1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	
	적용여부 판단기준	
	1 한국 정보주체 대상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여부 ···································	··· 13
	U 법 적용시 준수사항	
	1 유출통지 및 신고 ··································	··· 20 ··· 23
,	4 만14세 미만 아동 법정대리인 ····································	30
	7 개인정보의 분쟁조정 ····································	··· 34
	9 국내대리인 ····································	39

# I 배경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대한민국(이하 '한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 사업자가 증가<sup>1)</sup> 함에 따라, 외국에서 한국 정보주체<sup>2)</sup>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적용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해외사업자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보호법 적용 방법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증가하는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대처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실제 해외에 소재한 기업이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안에 대한 조사·처분 등 대응 방안, 한국어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글로벌 서비스에서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서의 보호법 적용 여부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는 본 안내서의 발간을 통해 보호법이 글로벌 서비스에 적용되는 원칙과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보호법의 합리적 적용 기준을 투명하게 밝힘으로써 해외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요구를 충족하도록 함과 동시에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한다.

<sup>1)</sup> 실제 국세청 신고 기준으로 그 기업 수와 매출액은 '16년 66개사 0.6조원에서 '21년 209개사 3.9조원으로 증가하였고, 보호위원회가 '20년 8월 이후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부과한 과징금은 1,133억 원에 달한다.

<sup>2)</sup> 한국에 거주하거나 한국 내에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보주체를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외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한국 정보주체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외사업자는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해외사업자에 대한 보호법 적용 여부는 한국 법률을 적용하는 일반적인 원칙과 보호법의 개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1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해외사업자가 전 세계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외에서 한국인 또는 한국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또는 한국 영토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3)으로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호법의 개별 규정 등을 살펴보았을 때,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 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규율 대상을 한국인 또는 한국 내 법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sup>3)</sup> 보호법은 정보사회의 고도화와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 증대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려는데 그 제정이유가 있다.

또한,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규정하고, 정보주체는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한국인 또는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4)

따라서 보호법은 한국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이 한국 내에서 한국인 또는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외에도, 1)해외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이 한국 영토 내 또는 밖에서 한국인 또는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2)한국 또는 해외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이 한국 내에서 외국인 또는 해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보호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다만, 국경의 구분 없이 정보 교류가 발생하는 글로벌 사회에서 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경우. 국제법상 원칙인 주권평등의 원칙과 내정 불간섭의 원칙 등과 충돌할 수 있고. 법 집행력 확보가 되지 않는 등 법 적용의 실효성이 사라질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보호위원회는 해외사업자에 대하여 국제법상 한국 법률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과 함께 1)한국 정보주체 대상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여부, 2)한국인 또는 한국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3)한국 영토 내 사업장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호법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 참고 보호법 관련 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sup>4)</sup>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2020.12.), 16면.

# 2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

한국 법은 원칙적으로 한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행위와 한국인이 실행한 행위에 모두 적용되고. 특히. 한국 또는 한국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의 국적과 행위지를 불문하고 적용 되다.

실제. 한국 정부는 외국기업이 한국 영토 밖에서 실행한 위법행위가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등 국내 질서에 '직접적·실질적 효과'를 미치는 때에는 적극적으로 조사·처분을 하고 있다.

#### 참고 한국법을 위반한 해외사업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행정처분

- **흑연전극봉 부당한 공동행위건**(공정위 제2002-077호, 2002.4.4.)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흑연전극봉 국제카르텔에 참여한 미국, 영국, 독일의 6개의 생산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2억 원을 부과하였다.
- 해외 지도 서비스 관련 조사건(방통위 의결 2014-4-27, 2014.1.28.)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 지역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와이파이를 통해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해외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1,230만 원을 부과하였다.
- **발신자 정보 표기 앱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관련 조사건**(방통위 의결 2019-28-116, 2019.6.12.)
  - 방송통신위원회는 발신자 정보 표기 앱에서 이용자의 동의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해외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만 원 및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건**(개인정보위 의결 다수)
  -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해외사업자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및 유출 통지·신고 위반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다수 부과한 바 있다.(보호위원회 출범 후 5개사)
- 온라인 광고 플랫폼의 동의 위반 관련 조사건(개인정보위 의결 2022-014-104, 2022.8.31.)
  - 보호위원회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여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한 해외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한국 법원 또한, 관련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법률의 적용 대상을 한국 사업자로 한정하는 등의 예외 규정이 없는 한, 법률에서 정한 목적, 위반행위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외사업자에 대한 한국 법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 참고 한국법을 위반한 해외사업자 관련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06.3.23., 선고 2003두11124
  -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참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체인 사업자를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내국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 점(제2조 참조)**,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함으로 인한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를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그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로 인한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쳤다면. 그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한도 내에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한국 법원은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한 조항에 대해 목적과 취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 조항들의 기능과 역할 및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법이. 준거법이 아닌 경우라도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 참고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강행규정성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7다219232
  - 소비자계약의 당사자가 소비자의 상거소지국이 아닌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경우에도 소비자의 상거소지국 강행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2) 한편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30조 제2항, 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한 **것인데.** 구 정보통신망법의 목적과 취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위 조항들의 기능과 역할 및 그 위반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부과되는 제재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적용여부 판단기준

해외사업자가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가 한국 정보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해외사업자의 사업장이 한국 영토 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 1 한국 정보주체 대상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여부

해외사업자가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해당 해외사업자는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터넷의 특성상 해외사업자는 사업장이 한국에 없어도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재화 또는 서비스 대상이 한국 정보주체임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경우도 제한적이므로, 해외사업자가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언어, 통화,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형태 및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보호법은 해외사업자가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적용 된다.

해외사업자가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는 경우<sup>(사례1)</sup>.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주소에 한국 국가 도메인(.kr) 또는 한국 대상 별도 도메인 (ko-kr 등)을 사용하는 경우<sup>(사례2)</sup>, 앱 마켓에 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출시하는 경우<sup>(사례3)</sup>. 한국어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사례4)는 해외사업자가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판단될 것이다.

※ 사례 1 해외사업자가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한민국(South Korea)을 서비스가 지원되는 국가 및 지역(Supported countries and territories)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 Supported countries and territories

We're proud to be able to provide API access to many countries, regions, and territories, and are always adding more.

Geographic diversity and broadly distributed benefits are very important to us and we are working hard to increase the number of locations we can provide safe access to. If your location does not currently support API access, please check back for updates at a later date. Here are the countries, regions, and territories we can currently support access from:  $(\cdot \cdot \cdot)$ 

#### South Korea

※ 사례 2 해외사업자가 인터넷 주소에 한국 대상 별도 도메인인 ko-kr.xxx.com 또는 www. xxx.com/ko-kr 등을 사용하여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 사례 3 해외사업자가 앱 서비스를 개발하여 한국 앱 마켓에 출시하거나, 글로벌 앱 마켓에 출시하면서 기본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한 경우,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 사례 4 해외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특정 국가의 법만 적용된다고 적시하더라도 한국어 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아 보호법이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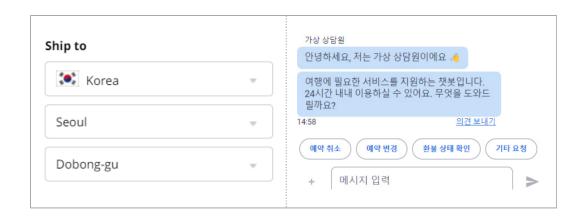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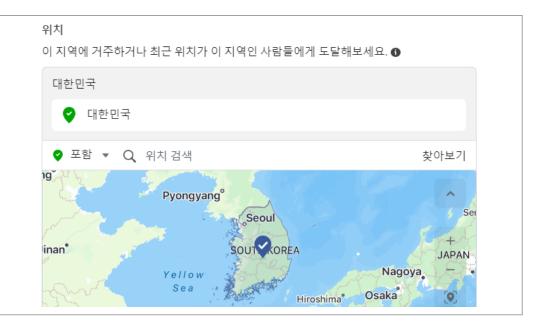
또한, 해외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언어, 통화, 재화나 서비스 제공 형태 및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나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판단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해외사업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보주체가 한국 국적 또는 주소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수집될 것을 알 수 있거나. 서비스 페이지에 직접 번역기를 탑재하여 정보주체가 적극적으로 번역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국어로 재화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면 한국을 대상으로 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의사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보주체의 한국 내 주소지를 수집하여 배송하면서, 한국어로 유선, 채팅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한국 정보주체 전용으로 상담 연락처를 제공하고. 한국 정보 주체를 대상으로 광고를 진행하거나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한국을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 참고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

<sup>1)</sup>해외사업자가 해외에서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단순히 한국인이 이용한 경우 <sup>(사례5)(사례6)</sup>. <sup>2)</sup>해외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범위에서 한국을 명시적으로 제외하여 안내하고, 실제 한국 정보주체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한국 정보 주체가 이용한 경우<sup>(사례7)(사례8)</sup>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한국인 또는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 ※ 사례 5 해외사업자가 해외에서 호텔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호텔에 방문한 한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게 된 경우. 해당 사실만으로는 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 ※ 사례 6 해외사업자의 업무 시스템이 해킹되어 현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경우, 해당 사실만으로 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 ※ 사례 7 해외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국으로 직배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한국 정보주체가 물건을 구매하여 배송대행지로 배송하였다면, 해당 쇼핑몰을 한국 정보주체가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 ※ 사례 8 해외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국 IP로부터의 접속을 차단하거나 앱 서비스의 경우 한국 앱 마켓 미출시 등의 수단을 강구하여 한국 정보주체의 이용을 명시적으로 제한하였다면, 한국 정보주체가 이를 우회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 하더라도 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 2 한국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 대상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여부와는 별개로 해외사업자가 한국인 또는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한국 정보주체에게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보호법이 적용된다.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가 한국인 또는 한국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은 사안별로 구체적·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보호법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해외사업자가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한국 정보주체에게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 사업자에게도 보호법이 적용된다.

해외사업자가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한국 정보주체에게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스스로 그 내용과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바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례의

※ 사례 9 해외사업자가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성명, 한국 주소 및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여 웹사이트에 공개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GYEONGGI-DO DANWON-GU ANS 2. 8200000000 GYEONGGI-DO YEONGTONG-■ SINJEONG-DONG 931-16 ■ 6. 7TH FL PARDISE PLAZA BD 856-3 JAN l Leave a message 7. GYEONGGI-DO BUNDANG-GU, SEO DAEJEON YUS 9. SUTAEK 2-DON

또한, 해외사업자가 한국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한국 사업자와 업무 위·수탁 관계에서 위·수탁자로서 한국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한국 정보주체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호법이 전용되다 <sup>(사례10)(사례11)</sup>

- ※ 사례 10 해외사업자가 한국 사업자에게 채팅 API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한국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 사례 11 해외사업자가 실제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이전받거나 열람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업자가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자신에게 제공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 감독하는 등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외사업자가 한국 사업자로부터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자신의 업무를 목적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사례12)

※ 사례 12 해외사업자가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위해 한국 사업자가 수집한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 및 관련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한국 영토 내 사업장 존재 여부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한국 내에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전 세계 공통으로 제공하면서 한국 내에 사업자를 설립하여 한국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처리자로 명시하고 있다면 해당 한국 사업자에게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한국인 또는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국가의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법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보호법은 해외사업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한국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적용되고. 사업장은 법인뿐만 아니라 개별 오피스나. 연락사무소. 그리고 수탁자의 사업장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재화 또는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처리가 한국 사업장의 활동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다. (사례13)

※ 사례 13 한국에 영업 조직을 두고 소프트웨어 판매 및 유지보수를 하는 해외사업자가 이와 별개로 온라인 쇼핑몰 해외에서 운영하면서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온라인 쇼핑몰은 한국 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참고로 해외사업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전 세계 공통으로 제공하면서 한국 사업자를 설립하여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처리자로 명시한 경우<sup>(사례14)</sup>는 한국 사업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한국 정보 주체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한국 사업자에게 보호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5)

※ 사례 14 글로벌 서비스 ABC가 한국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를 한국 법인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해당 한국 법인에게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 〈ABC 코리아 개인정보 처리방침〉

회원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관리하는 업체는 ABC코리아입니다. 회원이 ABC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항을 해결하기에 앞서 회원 및 ABC의 안전을 위해 신원 확인을 요구할 수도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보호법은 "정보주체"를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한국 내 사업장에서 외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 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해외에 있는 외국인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주체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국가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한국 보호법을 적용한다면 동일한 행위에 대해 복수 국가의 관할권이 경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가 국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해당 처리에 대하여 해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과 별도로 한국 보호법을 적용해야 할 합리성이나 정당성은 크지 않을 수 있다.

<sup>5)</sup> 한국 정보주체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액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등 실질적으로 한국 사업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한국 정보주체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따라서 한국에서 해외에 있는 외국인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타 국가의 법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한국 내 사업장에서 처리되고 있는 외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어 한국 정부의 조치가 요구되거나(사례15)(사례16), 한국 또는 해외사업자가 한국에서 해외에 있는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나 해당 국가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률이 없는 경우, 또는 법률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지나치게 불합리하여 보호법을 통해서라도 해당 정보주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호법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 ※ 사례 15 특정 행위를 한 해외 정보주체의 이름, 사진 등을 공개하는 사적 제재를 위한 웹사이트가 한국 내에서 운영되고 있어.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조치 등을 해당 국가로부터 요청받은 경우. 보호법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 ※ 사례 16 사업자가 한국 내 사업장에서 해외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소개팅 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집한 해외 정보주체의 얼굴 등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해당 국가의 법적 근거를 포함) 없이 다른 서비스에 사용한 경우로서 신고 등이 접수된 경우, 보호법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보호법이 적용되는 해외사업자는 보호법상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해외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

# 1 유출 통지 및 신고<sup>6)</sup>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외부에 공개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업무용 컴퓨터 등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외부로 전송한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 문서,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 없는 제3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유출에 해당한다.

또한, 개인정보가 검색엔진에 수집되어 인터넷상 노출되거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잘못 게재하여 권한 없는 제3자가 이를 다운로드 또는 열람한 경우, 이용자가 로그인 시 시스템 오류 등으로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메일을 오발송한 경우 모두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72시간 이내에 보호법에 정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고,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된 경우,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72시간 이내에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유출 사실을 알게 되었을

<sup>6)</sup> 구체적인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대응 매뉴얼(2023.9.) 참고

때는 권한 없는 제3자가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만으로도 충족한다.

해외사업자가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 등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개인정보 유출 사실 자체가 확인되고, 국가별로 정보주체를 구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을 운용하고 있지 않다면.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수 있다. 다만, 사고분석 결과, 72시간 내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면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내부 점검, 해커로부터의 연락, 고객센터를 통한 문의 접수 등을 통해 유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시점.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 해당 시점까지 확인된 내용 및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다른 사항들을 우선 통지 및 신고하여야 한다.

유출 신고는 개인정보 포털에서 할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메일(118@ kisa.or.kr)로도 접수할 수 있으며, 국내대리인 등에게 해당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한편.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삭제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증빙을 마련하여야 한다.

참고로, 직원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메일을 권한 없는 다른 직원에게 오발송하였더라도 사업자가 삭제. 안전조치 등을 지시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는 등 관리·통제권을 벗어난 상태로 보기 어려운 경우, 권한 없는 제3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등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권한 없는 제3자에게 열람되었거나 접근되지 않은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유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sup>7)</sup>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 → 기업·공공 서비스 → 유출신고

#### <보호법 제34조>

-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유출등의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호법 시행령 제40조>

- 제40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 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 1.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 2.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우선 신고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 ③ 법 제34조제3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각각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 2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방법<sup>8)</sup>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공개는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해외사업자가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할 때에는 한국 정보주체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국어로 작성 하여야 하고, 다른 국가의 법률 등을 전제로 수립한 처리방침을 단순히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법 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작성·공개하여 정보주체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보호법에 따라 제3자 제공 또는 위탁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일괄하여 공유(Share)로 작성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한국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핵심 사항을 정보주체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호 등을 활용하여 표시할 것을 권고한다.

참고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또는 개인 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별도로 구분하여 공개하는 것이 권장되나, 공개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중복되어 오히려 정보주체의 가독성 등 편의를 해치는 경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또는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정보주체가 알기 쉽게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경우 국가별로 이를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고, 해외에서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 해외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는 사실, 해당 국가 및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명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때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해 이용약관 등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sup>8)</sup>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에 있어서 준수 및 권장되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호위원회의 개정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2024.4. 예정)을 참고하면 된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변경 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언제든지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된 사항에 대한 전·후를 비교하여 정보주체가 변경사항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사업자에 따라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면서 보호법에서 정한 사항 일부를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 페이지에 포함하지 않고 한국에서 적용되는 추가적인 사항을 별도 페이지에서 공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 한국에서 정보주체에게 열람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하나의 웬 페이지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권고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상세 내용을 링크로 확인하도록 하는 경우, 링크로 연결된 페이지에서 재차 링크를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보주체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도록 해서는 안 되고. 링크가 의도한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링크로 연결된 페이지 또한 한국어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해 보호위원회가 내용의 적정성, 이해의 용이성, 접근성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가 대상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및 매출액,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및 규모,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및 방식, 법 위반행위 발생 여부, 아동·청소년 등 정보주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 참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대상 선정 세부 기준9)

- ① **전년도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면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 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일 것
- ②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5만명 이상일 것
- ③ 처리방침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법적 근거를 동의를 받아**

<sup>9)</sup>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24.2.20. 시행) 제4조

####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고 있지 않을 것

- ④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 포함)**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그 밖에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개인정보 처리 방식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을 것.
- ⑤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등이 2회 이상 되었거나. 보호위로부터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것
- ⑥ **19세 미만 아동 또는 청소년**을 **주된 이용자**로 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운영할 것

#### <부호범 제30조>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 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3의2.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 3의3.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4의2.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 <보호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2. 법 제28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의 근거와 같은 조 제 2항 각 호의 사항
- 3.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4. 국외에서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국가명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 2. 관보(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 4.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 3 정보주체 권리보장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 또는 방법과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관한 요구를 한국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사업자는 한국 정보주체가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이를 명확히 한국어로 안내하고, 가급적 인터넷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한국 정보주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 하여야 한다.

만약.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의 요구에 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 해외사업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한국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통지서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요청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권한을 국내 대리이에게 부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과 관련한 불만 처리의 업무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한편 해외사업자는 다른 국가 법령에서 한국 정보주체가 열람 요구한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열람·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외사업자는 해당 국가 법령에 따른 비공개의무가 한국의 헌법, 법률 등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 하는지,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해당 법령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실질적으로 비공개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검토 결과, 비공개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정보주체에게 제한·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하고. 열람·제공 거부 사유가 종료되는 경우 열람·제공하여야 한다.

####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 거절·제한의 가부 관련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7다219232
  - 대한민국 법령 외에 외국 법령도 함께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외국** 법령에 따른 비공개의무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등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그 외국 법령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이용자가 열람 제공을 요구하는 정보에 관하여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비공개요건이 충족되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실질적으로 비공개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등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이용자의 열람·제공 요구권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용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의 제공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그 정보가 제공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사후적으로라도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의 정보에 대한 불법·부당한 이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앞서 든 사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그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한·거절사유를 통지해야 하고. 특히 국가안보. 범죄수사 등의 사유로 외국의 수사 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가 이미 종료되는 등으로 위 정보수집의 목적에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이용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 사실을 열람 제공하여야 한다.

#### <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요구, 통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다.
-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제32 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 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 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동의 철회, 처리정지의 거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제36 조에 따른 정정·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제37조의2에 따른 거부·설명 등의 요구 (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 (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의 경우에는 전송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설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등요구의 방법과 절차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것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의 지속적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 또는 방법과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 3.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할 것.
- ④ 법 제3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 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와 제42조제1항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시간 및 장소 등(제42조제1항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만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포함한다)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열람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즉시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통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 제43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려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때에는 제41조제2항을 준용하되, "열람"은 "정정 또는 삭제"로 본다.
  - ②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정정· 삭제하거나 그 개인정보 정정·삭제에 관한 요구 사항을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어. 알리고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 삭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법 제 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제44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려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때에는 제41조제2항을

준용하되, "열람"은 "처리 정지"로 본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처리정지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4 14세 미만 아동 법정대리인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연령은 국가별 차이가 있고, 한국의 보호법은 14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외사업자가 아동을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동의 개인정보가 필수적으로. 수집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하여야 한다.

해외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의 개인정보가 필수적으로 수집되는지 여부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전달 방법이 시·청각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 웹사이트 또는 앱에 등장하는 모델 캐릭터 등이 아동 지향적인지 여부, 대다수 아동이 접근 가능하고 이용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해외사업자가 이러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아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연령정보를 확인하여야 하고, 연령정보의 확인은 적어도 정보 주체가 생년월일을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확인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한국 내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본인확인 서비스에는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가 있으며,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 특성에 따라 선택하여 도입할 수 있고, 본인확인 지원포털(identity,kisa.or,kr)에서 본인확인기관 현황 및 서비스 확인이 가능하다.

#### <보호법 제22조의2>

-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 및 동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2>

- 제17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 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② 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말하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주소 또는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법정대리인에게 안내할 수 있다.

# 5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은 개인정보를 국외에서 조회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국외로 제공하거나 처리위탁 또는 보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 및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보관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등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외사업자는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 관련 법률 등. 인증. 인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합법적인 국외 이전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사업자가 한국 사업장에서 고용한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살펴보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사업자는 보호법에서 정한 국외 이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보호조치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다.

국외 이전받은 자가 재이전 하는 경우, 재이전받은 자도 보호법이 적용되므로, 재이전의 경우에도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흐름을 확인하고 보호법이 준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보호법 제28조의8>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이하 이 절에서 "이전"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
- 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
-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모두 한 경우
  - 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필요한 조치
  - 나. 인증받은 사항을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5.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말한다)
-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 5.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과 관련한 이 법의 다른 규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8>

제29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인증)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8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인증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 1. 제34조의6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의 평가
- 2.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국외이전전문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 3. 정책협의회의 협의
-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8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인증을 고시할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유효 기간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고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6 손해배상의 보장 등

정보주체는 해외사업자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손해를 입으면 해외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호법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별로 손해배상 의무 여부를 판단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해외 본사와 한국 지사가 각각 한국 정보주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본사와 지사는 각각의 이용자 수와 매출액을 판단하여, 의무대상자에 해당하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본사에서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보장범위에 한국 지사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서의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포함된다면 한국 지사가 별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해외사업자가 한국 보험 또는 공제를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국가의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하는 경우, 보장범위에 한국 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이 포함되어야 한다.

#### <보호법 제39조. 제39조의7>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 7.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 도난 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 제39조의7(손해배상의 보장) ①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 2.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자
  - 3. 다른 법률에 따라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개인정보처리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7>

- 제48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7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가입 대상개인정보처리자"라 한다)를 말한다.
  - 1.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매출액등이 10억원 이상일 것
  -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제15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가 일일평균 1만명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연도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분할 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정보주체의 수가 1만명 이상일 것
  - ② 법 제39조의7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1. 공공기관. 다만,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제32조제4항 각 호에 해 당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 ③ 법 제39조의7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1.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으로부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저장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
  - 2. 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법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자
  - ④ 가입대상개인정보처리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최저가입금액(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최소적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다만, 가입 대상개인정보처리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금액과 준비금 적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별표 1의4에서 정한 최저가입금액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 7 개인정보의 분쟁조정

해외사업자가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손해를 입힌 경우, 한국 정보주체는 해당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해외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분쟁조정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참고로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외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해외사업자는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보호법 제43조, 제45조>

-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 제45조(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기구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해당 조사·열람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조사 열람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조사·열람을 하는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8 개인정보 처리위탁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개인정보의 제공'과 '개인정보처리(취급) 업무의 위탁'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법원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본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인 반면, 개인 정보의 처리위탁은 본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위탁자 본인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해외사업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당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제3자에게 이전한다면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보주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해당 해외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수 있다.

반면.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의 범위를 넘어서서 제3자에게 이전하려거나 제3자와 정보주체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제3자에게 이전하려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 위 수탁 관계에서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을 운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는 수탁자에게 있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교육,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보호법은 수탁자에 대해서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수탁자가 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때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면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에 대해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 <보호법 제26조>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⑦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 ⑧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 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 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 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수탁자"로 본다.

### <보호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4.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5.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 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을 말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여야 한다.
- 1. 위탁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 2. 관보(위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위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 4.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 ④ 법 제2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 ⑤ 위탁자가 과실 없이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⑥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독하여야 하다.

### 9 국내대리인

한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로서 매출액10이나 개인정보 보유규모11)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자로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호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한국 내 영업소의 유무는 국민의 개인정보 고충처리. 개인정보 침해신고 시 규제 집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한국에 별개의 법인을 설립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인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해외사업자는 자신이 설립한 국내 법인이 있거나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대리인의 자격은 한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있고, 자연인의 경우 국적은 한국인일 것을 요하지 않으나.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고충을 처리하고 규제기관에

<sup>10)</sup> 매출액은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하여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전체 매출액을 의미하며,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sup>11)</sup>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10월 1일~12월 31일, 92일) 그 개인정보가 저장 관리되고 있는 국내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서면으로 지정해야 하며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해야 하고. 복수의 국내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지정된 국내대리인 모두에 대한 관련 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정하여야 한다.

전화번호는 국내 전화번호를 말하나 반드시 국내대리인의 이동전화 등 개인용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고충 처리 및 상담 업무를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관련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해외사업자를 대리하여 수행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신고할 수 있다.

국내대리인은 보호위원회로부터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해외사업자를 대리하여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하므로.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한국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업무는 실질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므로, 직원이 응대하지 않고 녹음된 음성으로 전자우편 또는 온라인 양식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거나. 직원이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보호법 제31조의2>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 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 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 1. 제31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 2.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 3. 제63조제1항에 따른 물품 서류 등 자료의 제출
-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32조의3(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 관리되고 있는 국내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 3.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관계 물품 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로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호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자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전년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다.

### 10 조사 및 사전 실태점검

보호위원회는 보호법이 적용되는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도 보호법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경우, 법 위반에 대한 신고 민원을 접수한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사고 등의 발생 또는 발생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보호위원회는 조사 및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자 등에게 관계 물품 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외사업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대표자, 대리인, 그 밖의 임직원 등 관계인에게 진술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참관시킨 후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사업자에게 관계인의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해외사업자는 변호인을 조사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나, 변호인 참여 요청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조사관의 승인 없이 조사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 해외사업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해 변호인이 기억 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하는 것을 넘어 신문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그 밖에 조사목적 달성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보호위원회로부터 조사 또는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을 받는 해외사업자는 이에 대응하고 전반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임직원과 구체적인 사안별로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는 임직원 중에서 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하고, 그 연락처 등을 보호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해외사업자는 보호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한국어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필요시 보호위원회를 방문하여 조사관에게 이를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보호위원회에 위임장을 제출하여 자신이 설립한 한국 법인 또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국 법인의 임직원이나. 한국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호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 법인의 임직원이나 변호인이 단순히 조력하는 것을 넘어 사실관계를 회피 또는 왜곡하거나. 사실관계 파악과 관련이 없는 법리적인 주장을 하는 행위는 조사의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참고로 보호위원회는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보호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적용 법령 등이 포함된 사전통지서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므로, 해외사업자는 한국 법인의 임직원이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하면서 보호법과 관련한 법리적인 주장을 할 수 있다.

### <보호법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관계 물품 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① 보호위원회는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인 정보 침해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인 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해당 개인 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를 수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3조>

- 제10조(현장조사) ① 조사관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 (이하 "사무소등"이라 한다)에 출입하여 그 대표자, 대리인, 그 밖의 임직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진술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참관시킨 후 업무 상황, 장부·서류, 기타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고, 해당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변호인의 참여) ① 조사관은 조사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인을 조사 과정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조사대상자의 변호인 참여 요청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 2. 조사관의 승인 없이 조사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
  - 3. 조사대상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 4. 신문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조사대상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해 변호인이 기억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 5. 그 밖에 조사목적 달성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의 사유로 조사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변호인 참여 요청과 관계없이 조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다.

### 11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보호위원회는 해외사업자가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개인 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과태료 또는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해외사업자 및 그 대표자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징계를 권고할 수도 있으며, 처분 등 사실을 보호위원회가 공표하거나 해외사업자에게 처분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에 보호위원회는 해외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 해외사업자의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 접속 차단, 앱 배포 차단 및 다른 재화 또는 서비스와의 연계 차단 등의 조치를 강구 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와 관련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 앱 마켓 사업자, 기타 관계 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다.

보호위원회가 해외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보호법에서 규정한 전체 매출액은 한국 내에서 발생한 매출액으로 한정되지 않고, 해외사업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전 세계 매출액을 의미한다. 다만, 보호위원회는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며, 이 때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의 입증책임은 해외사업자가 부담한다.

해외사업자는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는 등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보호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참고로 해외사업자의 위반행위 또는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처리한 결과물 등이 해당 해외사업자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전 세계에서 매출이 발생한다면, 해당 매출액은 위반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2)

<sup>12)</sup> 해외사업자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한국 정보주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서비스의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하였고, 이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 사용하였다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 한국 내 매출액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 <보호법 제61조, 제64조, 제64조의2>

####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64조(시정조치 등) ① 보호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 2.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 · )
  -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 및 비슷한 규모의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유 규모.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상품·용역의 가격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개인정보유출신고					
신고기관							
신고기관 유형	□ 기관 / □ 일반사업자 / □ 기타						
정보주체 통지여부	□ 통지 / □ 미통지						
신고기준	□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 민감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 기타(신고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우선 신고하는 경우 등)						
	성 명						
신고인	연락처						
	이메일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사업자주소 (사업자등록기준)							
웹사이트 주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 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 절차							
	담당부서·담당자 및 연락처						
	성 명		부 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직 위		연락처				
エエコロバ	이메일						
-1101-111	성 명		부 서				
개인정보 취급자	직 위		연락처				
TIEM	이메일						

## 붙임2

##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번 호				
	생년월일		·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 [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요구내용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	적				
	[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시	h실 및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귀하

### 작성 방법

-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 2. '요구내용' 탄은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며 [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 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

	에 관한 고시 [병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10, 16,) [ ] 열람 [ ] 일부열람 [ ] 열람연기 [ ] 열람거절)	동지서
수신자 (우편	변호: , 주소:	(앞 쪽)
요구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통지 내용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열람 형태 및	열람 형태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물·인화물	[ ]기타
방법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월 ②우송료 월 계(①+②) 수수료 산정 명세	월
사 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사 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호법」 제35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또는 제42 성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조제2항에
	년 발 신 명 의 <u>찍인</u>	월 일



#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 개인정보 처리 방법 개인정보 (						대한	결과	동지	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
요구 내용									
□ 정정 • 삭제 □ 처리정지 조치 내용									
□ 정정 • 삭제 □ 처리정지 결정 사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의	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개인정보 보 시행령 제44조제2		조제6항 및 같  하의 요구에				을 법 제37.	조제6항 5	및 같은	법
			발 신 [	명 의 직업	<u> </u>		년	윌	일
			유의	비사항					
개인정보의 정정· 할 수 있습니다.	삭제 또는 처리정	지 요구에 대한 결	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정	정보처리자가 '이오	시제기방법'단0	세 적은 방법	으로 이의	제기를

발 행 일 2024년 4월

발 행 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원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디 자 인 호정씨앤피(☎02-2277-4718)



※ 최신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pipc.go.kr)", "개인정보 포털 (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외사업자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